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8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족연금 수급자인 배우자의 재혼시에도 계속지급〉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01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3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16.
3. 회부연월일 : 2025. 9.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하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은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2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분할연금의 수급자격¹⁾과 같이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재혼한</u>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u>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이 재혼한</u>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사실상 혼인관계 포함)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 이는 새로운 가족관계 발생으로 인해 가족적 지위가 변동됨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금수급권을 사후에 소멸시키는 것임.

□ 개정안³⁾은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재혼’을 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아 이를 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첫째, 재혼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혼인과 비혼인을 구별하게 된다는 점에서 혼인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되고, 남은 유족에게 비혼을 강요하는 성격을 갖게 되어 사실상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임.⁴⁾

둘째,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다가 이혼한 경우에는 재혼 이후에도 분할연금을 계속해서 제공받는데 비해, 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급하는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재혼을 하게 되면 연금수급권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데,

2)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여타 공적연금의 경우에도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3) 다른 연금에 대해서도 「군인연금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99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98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0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03호)

4)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 교육, 보건·복지, 여성·가족 분야」, 2017. 12.

유족연금의 경우 유족에 대한 사회보장적 측면과 함께 생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분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수급권을 전부 소멸시키는 것은 재혼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임.⁵⁾

이에 개정안은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제도의 취지상 재혼한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하는데, 그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유족연금은 사망한 군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배우자, 자녀 등)이 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계 곤란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과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5) 차성안,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노동법연구 32』,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2, 336~337.

소멸되므로 재혼한 사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족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임.

둘째, 분할연금은 재직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군인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군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과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분할연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임.

□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2019헌가31)에서 배우자가 재혼을 통하여 새로운 부양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재혼 상대방 배우자(새 배우자)를 통한 사적 부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으로서의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한정된 자원 등을 고려할 때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례가 있음.

□ 국방부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 협업 결과인 점, 분할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유족연금은 군인 사망으로 인한 생계 곤란 시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이자 군인과의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파생적 급여인 점과 헌법재판소 결정례(2019헌가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유족연금 수급자의 재혼에 따른 수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재산 형성 기여분적 성격, 합리적인 사유없는 차별 측면, 군인연금 재정,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서도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에서 제외시키는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⁶⁾ 각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04

6) 다른 연금에 대해서도 「군인연금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되어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99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98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0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03호)

※ 참고자료. 「공무원연금법」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관련 조항 위헌제청 (2019헌가31)

- (사건 개요) 공무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1992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청구인이 2014년 9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어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유족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공단이 2014년 10월 이후 수령한 연금의 환수를 고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함

* 구 「공무원연금법」 ('12.10.22. 법률 제11488호)

제59조(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결정 요지)

1. 부부는 민법상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를 갑작스러운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여 유족연금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생략)···
2. ···(생략)···심판대상 조항이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것은 배우자가 재혼을 통하여 새로운 부양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재혼 상대방 배우자를 통한 사적 부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으로서의 보호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생략)